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 옥 임 · 이 기 련* · 김 종 성** · 이 정 숙***

순천대학교 소비자-가족아동학과 · 인제평화쉼터* · 한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동의대학교 아동-가족환경학과

A Study on the Improvement Programs of Shelters for Domestic Violence Victims

Park, Ok Im · Lee, Gi Ryeon* · Kim, Chong Sung** · Lee, Jeong Suk***

Dept. of Consumer and Family - Child Studies,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Korea

Injae Peace Shelter, Suncheon, Korea*

Dept. of Social Welfare, Hanlyo University, Kwangyang, Korea**

Dept. of Child and Family Environment, Dongeui University, Pusan,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s to lay the foundations for domestic welfare through solving domestic problem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many domestic violence facilities, but their poor financial condition and lack of human resources make it difficult to meet all need of shelter users. Second, people who use domestic violence shelters can't receive proper care and they go back to their homes in which violence still remains. It is like a vicious cycle making their situation worse and worse. Third, counseling given to abused women in shelters is arranged individually or in groups, but there are not enough programs providing proper care for them. On the basis of the realities mentioned above, this study was intended to pave the way to work out the improvement programs as follows: First, it is critical that the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should be increased.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training of personnel concerned with the handling of domestic violence cases. Third, it is important to make sure that children of abused women should be taken care of safely, and temporary jobs for the women should be secured. This will allow domestic violence shelters to serve their true purpose. Lastly, more adequate counseling services such as more instrumental 1366 phone lines, the development of various programs and the follow-up counseling should be reinforced.

Key words: shelter, domestic violence, abused women, improvement programs

접수일: 2005년 7월 20일 채택일: 2005년 11월 23일

Corresponding Author: Park, Ok Im Tel: 82-61-750-3671

E-mail: parkok@sunchon.ac.kr

I. 서론

1. 문제의 제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 문제는 폭력의 빈도와 그 상해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가정의 존립마저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동안 개별 가족 내의 문제로 은폐되고 외면 받아왔다(Ammerman · Hersen 1999). 즉 타인이 간여해서는 안 되는 사적인 가정문제나 부분문제로 금기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권적 기본권향유와 인권신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공유되면서 1998년 7월 1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으로 통칭)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먼저 가정폭력방지법의 시행으로 그간 가정폭력이 개별가정의 단순폭력이나 갈등의 표출로 이해되어왔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개인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공적 개입이 필요한 사회문제로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점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8)의 자료에 의하면 가정폭력은 인간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폭력성의 반영으로 보아 한국사회를 위험사회로 규정하기도 한다(심영희 1998).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재엽 1997)에서는 남편 10명중 3명꼴인 31.4%가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1,300만 가구 중 408만 쌍의 부부가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자에 관한 연구(서영숙 · 박옥임 2002)에 의하면 부모에 의한 가정폭력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사회학습이론과 역할모형이론에 의하면 폭력 행위를 하나의 학습된 행동으로 본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일반인에 비해 폭력이 빈번한 가족적 환경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아 폭력의 사회적 학습과 폭력의 세대전달을 지적하고 있다(이소희 ·

이무영 2004). 따라서 가정폭력 문제는 사회가 가족의 안전성에 위협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간주되어 적극적인 치료와 예방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절실함이 지대하다고 하겠다(보건복지부 2002).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쉼터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또한 피해자의 단기간 보호와 신체적 치료에만 치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궁극적으로 피해여성을 구타남성의 폭력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공미혜 1999).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구제하고,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지하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004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16개 시·도에 가정폭력상담소 182개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 쉼터(이하 쉼터) 48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여성부 2005a).

하지만 현재 가정폭력 상담소와 여성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피해자 및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이 매우 빈약하여 단순 격리보호나 임시구호적인 성격인 질다. 이처럼 피해자 치료와 가해자 교정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을 통한 치료나 재활,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자립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특유의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 남편의 폭력을 관대하게 인정하는 사회문화적인 암묵적 수용과 묵인으로(김경신 등 1999) 계속 증가하고 있는 남편의 아내학대 행위에 초점을 맞춰 가정폭력 피해여성보호시설인 쉼터를 중심으로 그 실태와 문제점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가정폭력의 위기상황에서 긴급보호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쉼터의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가정폭력문제해결을

통한 가족복지증진에 필요한 정책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여성부에서 발행한 2005년도 여성권익증진사업안내와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행한 자료 중심의 문헌조사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전국 쉼터의 현황은 2002년 ‘한국여성의 전화’에서 발행한 쉼터 매뉴얼과 2002년-2004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보호 관련통계(여성부 2005a)를 참조하여 파악하였다.

II. 쉼터의 설립배경과 운영실태

1. 쉼터의 설립배경과 의의

1) 설립배경

가정폭력 피해자가 상습적으로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여 긴급하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를 쉼터라 지칭한다. 쉼터는 피해여성의 지원과 자활프로그램이 핵심인 여성주의적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이라 할 수 있다(배인숙 2004).

최초로 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 국가는 영국으로 1971년 에린피치(Erin Pizzy)라는 여성운동가에 의해 만들어졌다. 쉼터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1972년 한 해 동안 30여명이 넘는 여성들과 아이들이 며칠 또는 몇 달 동안 거주하게 되었다 (Dobash & Dobash 1979). 스코틀랜드 여성지원센터(Scottish Women's Aid)에는 1989-1990년도 기준으로 32개의 쉼터를 가진 7개 집단이 소속되어 있으며, 12,000명의 여성과 아이들이 이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그 기간동안 시설부족으로 되돌아간 여성과 아이들만도 2,000명이나 되었다. 웨일스는 32개의 쉼터가 있어 5,000여 명의 여성과 어린이들이 보호받고 있으며, 잉글랜드는 100여개의 집단이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Dobash & Dobash 1992).

미국은 영국보다 약간 늦게 쉼터가 설립·운영되었는데, 1972년 미네소타 세인트폴의 여성유권자회(Women's Advocates)가 법적구제사무실에서 피해여성들을 위한 전화서비스를 실시하는데서 비롯되었다. 즉 전화 내담자의 대다수가 남편

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임을 알게 되었지만 지역사회에서 어떤 도움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해남편을 피해 도망 나온 여성들을 자원봉사자의 집으로 임시로 피신케 하는 일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후 1974년 10월 ‘여성의 집’(Women's House)이 개소하게 되었고, 개소 첫 달에 22명의 여성과 15명의 어린이를 보호하게 되면서 지금의 쉼터가 만들어졌다. 이 쉼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1989년 현재 가정폭력을 당한 아내를 위한 프로그램만도 1200개에 이르고, 쉼터에서는 전국적으로 연간 30만명의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Parker & Ulrich 1990).

한국의 경우, 1974년 여성운동가들이 여성해방의 관점에서 남성우위의 가치, 이념, 제도 등을 변혁하기 위한 새로운 여성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국여성의 전화’라는 단체를 만들기로 합의하고, 여성문제로서 가정폭력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사회적 대응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사회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708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실태 기초조사에서 42.2%에 달하는 여성들이 결혼 이후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음을 밝혀내고, 가정폭력에 대항하는 대중여성운동단체로서 1983년 6월에 ‘한국여성의 전화’를 개원하여 전화상담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 ‘한국여성의 전화’ 전화상담의 절반에 가까운 44%정도가 가정폭력 중 아내구타 문제였고, 제공되는 서비스는 전화상담으로만 그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남편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여성들이 찾아올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의 집에 일시적으로 머물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1980년대에 들어서 ‘한국여성의 전화’가 우리사회에서 최초로 가정폭력문제인 아내구타에 관심을 쏟게 되면서 1987년에 방 3개가 딸린 가정집을 개조하여 만든 사무실의 방 1개를 ‘쉼터’(shelter)로 명명하고 처음으로 쉼터를 만들어 지게 된 것이다(한국여성의 전화 1992).

그 후 가정폭력문제가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여성운동단체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가정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쉼터가 전국적으로 개소되어 2004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16개 광역시 및 도에 48개소(여성부 2005a)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이 운영되어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동반 아동을 돕고 있다.

2) 쉼터의 의의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높지 않은 편이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최근의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02년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인구 일천명당 3.0건으로 OECD 회원국 중, 미국(4.2건)에 이어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불과 20여년 남짓한 기간에 이혼율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다(한경혜 2003).

이혼의 가장 큰 이유로 많은 학자들이 부부불화의 요인을 지목하고 있다(김정옥 2002; 이소희·이무영 2003; 한경혜·이정화 2002; 한경혜 2003). 부부불화의 요인으로 아내의 경우는 남편의 주벽, 알코올 중독, 성격차이, 생활무능력, 신체적·언어적 폭력·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대와 관련된 주벽·폭행 및 폭언·의처증이 대다수를 차지함으로써 아내학대로 인한 가정파탄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아내학대 문제의 심각성은 여러 기관의 조사와 상담기관에서 접수된 폭력사례 상황에서도 알 수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

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 가운데 전국의 가정폭력 가해자의 통계를 보면, Table 1에서 알 수 있듯이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상담건수는 2002년 81,142건(83.0%), 2003년 82,795건(83.3%) 2004년 62,629건(88.1%)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쉼터의 입소인원은 2002년 3,286명, (동반아동 1,072명), 2003년 3,911명(동반아동 1,298명), 2004년 4,232명(동반아동 1,48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쉼터에 의한 연평균 보호인원도 2002년도 294명, 2003년도 379명 2004년도 467명으로 해마다 증가 하고 있다(여성부 2005b). 더욱 안타까운 것은 동반아동의 숫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으로 폭력의 세대전달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가정폭력의 사회적 심각성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발생을 억제하고, 부부간의 화해·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쉼터에서의 적극적이고 만족할 만한 전문서비스의 제공이 대단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가정폭력 피해 여성 대부분은 가정폭력의 피해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소극적 혹은 부정적인 견해로 집안에서 고립되어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부분의 피해여성은 폭력에 의한 신체적 외상과 더불어 분노, 우울, 조울 등 심리적 장애가

Table 1. Domestic violence victims

(Unit : Person)

Year	Spousal Abuse	Number of Persons Sheltered			Year Average Number of Persons Sheltered
		Subtotal	Victims Sheltered	Children Accompanied	
2002	81,142 83.0%	3,286	2,214	1,072	294
2003	82,795 83.3%	3,911	2,613	1,298	379
2004	62,629 88.1%	4,232	2,747	1,485	467

Reference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05b) <http://www.mogef.go.kr/>

지 수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가해자인 남편이 자신의 폭력행위를 은폐하고 아내를 집요하게 결박·구속하고자 하여 아내의 외부 접촉을 통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서비스 기관에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가정폭력문제가 가족간의 합리적인 대화나 친족의 개입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피해여성의 친지나 친족이 가정폭력은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여 법적 제도적 대응이라는 가족적 지지나 병원 및 상담기관의 전문가 도움을 받도록 해야만이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의 현장을 벗어나 신체적으로 안전하고 심리적인 치유를 통해 자신의 가족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한다. 동시에 폭력을 극복하고 재할, 자립해 갈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해 가도록 하는 다양한 전문프로그램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피해여성은 공간적, 전문적 서비스를 수혜할 수 있는 쉼터에 입소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쉼터의 의의는 일단 가정폭력 가해자들에게 폭력행위가 사회적 범죄임을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이라는 경각심을 깨우쳐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위기개입의 일차적 치료목표인 신체적 안전과 심리적인 위안을 주고, 더 나아가 경제적인 자립까지도 도모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가정과 사회복지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는 점이다. 위기개입의 최소한의 치료목표는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심리적으로 해소하고, 개인이 위기상태 이전에 보존하고 있었던 기능수행의 차원까지 회복시켜 주는데 있다(변화순·김현주 1993). 아내학대는 시간(시점, 시각)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는 맥락에서 위기중재 프로그램으로서 쉼터 운영은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중하다고 본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쉼터에서 제공되는 위기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은폐 등 폐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피해여성과의 자

조그룹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가정폭력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상실되었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여 상황을 극복해 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쉼터의 운영실태

1998년 제정된 ‘가정폭력방지법’에는 쉼터의 임무에 관한 법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쉼터)의 운영 목적은 ①배우자로부터 물리적·정신적으로 학대받는 여성(아동포함)의 긴급피난처로서 그들에게 마음의 여유와 신체적인 휴식을 주어 심신의 안정과 치료를 돕고, ②지속적인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신의 피해와 상처를 극복하고, 냉정하게 자기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지하며, ③관내 기관과의 연계추진으로 법률·의료·취업에 대한 조언·지원 및 알선활동을 통하여 피해여성의 홀로 서기를 도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운영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제반 운영상의 요소들 가운데 재원과 재정, 인력, 시설, 이용자관리측면에서 운영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재원과 재정 운영

쉼터의 운영재원은 대부분 국고보조와 일부 후원금으로 조달되며, 국고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나뉘어 공동지원된다. 시설 이용자의 비용 부담은 없다. 국고보조금의 재정지원항목은 인건비, 운영비로 이루어지고, 지원금액의 책정은 4,541천원×연평균 보호인원으로 되어 있다. 지원금액에서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시설장, 상담원들의 급여로 지출되며, 급여수준은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기준으로 산정된다. 운영비는 입소자의 주식, 부식비, 피복비, 건물의 난방비, 시설유지비, 경상 잡비 등으로 산정되어있다(여성부 2005b).

운영비의 지급이 보호인원 1인의 1일 비용으로 책정되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건물의 난방비나 시설 유지비, 경상 잡비 등이 계

정되어 있지 않아 보호인원이 적은 쉼터의 경우 재정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의 재정책정에 있어 평균 보호인원으로 책정하기 보다는 시설 마다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를 분리하여 책정하여 보호시설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국고보조금의 지원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시키지 않고 통합예산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지원이나 후원금이 아예 없거나 열악한 지방의 소규모 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 상담원의 처우가 매우 낮고, 때로는 인건비 확보마저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이러한 낮은 처우와 근무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 상담원들의 이직이 높은 편이고, 직무수행상의 사기저하 등으로 입소자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담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 근속에 의한 경험상의 전문성 제고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2) 인력

가정폭력방지법의 규정에 의하면 쉼터에는 시설장과 상담원 등 자격을 갖춘 종사자를 두어야 하며, 휴일, 야간 및 긴급 상황 대비 1인 이상이 상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국 각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전문상담원 수는 시설장과 상담원 1인 혹은 2인인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규정상 24시간 상시근무의 필요에 따라 하루 2교대로 시설장과 상담원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하루 12시간씩 7일간 근무하기 때문에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84시간으로 정부가 고시한 주당 평균노동시간의 2배 이상을 근무하는 등 전문인력의 절대 부족이 문제이다.

간헐적으로 주간에 자원봉사자들의 사무보조나 생활지도담당을 지원받고 있지만 책임성과 지속성의 측면에서 많은 한계가 있고, 쉼터 입소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2명의 종사자로는 전문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앞으로 급격히 양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호시설 입소자를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2명의 종사자로는 외부의 직무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사자의 직무교육 제고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시설

각 쉼터의 시설 기본면적은 입소정원 당 3.3㎡ (1평)이며, 최소 면적은 10평부터 가능하다. 현재 대다수의 시설은 30평 - 50평 정도로 입소정원이나 법인의 조건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입소정원이 30명의 경우에 기본면적은 30평이지만 45평의 규모인 시설이라 할지라도 입소자의 생활이 매우 불편하는 등 물리적인 환경조건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 하겠다.

어떤 쉼터의 경우는 30여평 되는 아파트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기도 하며, 단독주택인 경우라도 보호실이 3개-5개 정도이기 때문에 동반아동이 있는 피해여성의 입소가 불가능하거나 입소한다더라도 전문서비스의 제공이나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즉 가정폭력으로 심신이 지쳐 있는 피해여성들이 다른 입소자 아동들의 입소로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입소자끼리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현재의 시설규모로는 쉼터의 운영 목적에 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박영란 2004).

따라서 쉼터에서 피해여성과 그의 자녀가 동반입소하게 되는 경우 해당 개별 가족의 사적인 공간 확보는 물론이거니와 동반아동의 교육권 보장 측면에서도 현재 보호시설의 설치기준의 규모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보호시설 설치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며, 기존 피해자보호시설의 증축이나 신규 보호시설일 경우에 시설규모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쉼터 접근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입소자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극도의 심리적 불안감과 자존감의 손상으로 쉽게 자신의 문제를 노출하거나 제3자가 인지하는 것 자체를 매우 꺼려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의 심신 안정과 신변보호를 위해 용이하게 컴퓨터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의 확보문제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된다.

그간 입소자의 입소경로를 보면 Table 2와 같이 2003년도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41.7%), 경찰(13.6%), 사회단체(복지시설포함)(8.2%), 일반 행정기관(7.2%), 여성긴급전화인 1366(6.4%)의 순위였으나 2004년도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27.8%),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25.7%), 경찰(9.9%), 사회단체(복지시설포함)(4.1%), 일반 행정기관(2.3%), 학교교사(1.4%) 등 다양한 입소경로를 보이고 있다.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변화는 면접상담으로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를 통한 입소사례는 감소하고, 전화상담으로 이루어지는 여성긴급전화1366을 통한 입소사례는 늘어난 점이다.

그러나 아직도 본인이 직접 입소하는 경우는 19.3%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으로, 이는 현재 피해자의 신변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러 단계의 절차를 밟아 입소하게 되어 있는 입소절차상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자신의 문제가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입소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볼 때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피해자 자발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컴퓨터와 직접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의 통합적인 접근이 절실히 요구되

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컴퓨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컴퓨터에서 상담원이 지시·조언·충고·훈계·해결·방안제시 등의 상담자 중심에서 가정폭력피해자 스스로가 자신들의 판단·의사결정·원인분석·가치 등에 기반을 둔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고, 이때 컴퓨터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재정적, 법적, 의료적, 정서적, 직업훈련서비스가 피해자들에게 수용되어 문제해결에 있어 책임성과 만족도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컴퓨터 운영상의 문제점

1. 피해자 자립지원 빈약

현재 컴퓨터의 기능과 역할은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한 여성이 위급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숙식제공의 단순한 역할에 머물러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단순한 숙식제공만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겪고 있는 현실적 장애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수의 피해자들은 컴퓨터에서 일시 보호를 받다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도 컴퓨터 이전의 상황과 뚜렷한 변화없이 폭력의 상황에 놓여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여성의 전화에서 운영하는 컴퓨터는 피해여성들에게 육체적,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Table 2. Channel of being sheltered

(Unit : Person, %)

Year	Total	Self	Domestic Violence Counseling Office	Sexual Violence Counseling Office	General Administration Institution	Police	Social Facilities (Welfare Facilities)	School/Teacher	Women's		
									Hospital	hot line 1366	Others
2003	2,613	-	1,049	40	187	355	214	3	9	168	588
	100%	-	40.1	1.6	7.2	13.6	8.2	0.1	0.3	6.4	22.5
2004	2,747	532	677	28	65	272	112	12	7	766	276
	100%	19.3	24.6	1.1	2.3	9.9	4.1	1.4	0.2	27.8	8.3

Note) Item 'Self' Added to Year 2004

Reference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05b) <http://www.mogef.go.kr/>

* 1366 means emergency call service for women.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박영란 2004). 이 경우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성단체에서 지금까지의 많은 노하우와 인적 자원의 확보 및 재정적인 어려움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비교적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기타 많은 쉼터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쉼터 입소자에게 공통되는 희망사항 및 욕구는 가해자의 위협으로부터 신변상 보호를 받아 다시는 자신이 폭력의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며, 법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삶의 주체자로서 생활을 영위하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자녀교육 및 자신의 경제적 활동이 보장되는 취업과 직업교육이 병행되기를 회구하고 있으며, 상담을 통하여 상처받은 자신의 자존감과 가치를 회복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쉼터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에게 자립지원의 기능을 확보하여 보호기간 또는 보호기간 이후까지도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쉼터는 재정적인 한계와 전문 인력의 부족, 입소자에 대한 협소한 공간적 문제, 다양한 직업훈련프로그램 부재로 인한 자립지원미흡 등으로 통합적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단순한 보호시설의 업무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피해여성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전문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자립지원을 위한 쉼터의 기능이 현재 정부의 지원 틀 안에서는 시행되기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박영란(2004)는 기존 쉼터와 연계하는 '자립준비형 쉼터' 신설이라는 2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대안제시에 대해 현재 쉼터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상담원들이나 일부 연구자들은 2안의 경우, 정부의 재정적 부담과 쉼터를 이용하는 입소자에게는 또 다른 관계형성과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보고, 기존의 쉼터에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는 1안이 더 적은 재정적 비용으로 입소자의 정서적 안정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인 운

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종사자 전문성의 부족

가정폭력의 원인은 행위자마다 다양하여 어느 하나의 관점이나 이론으로 충분히 밝히기가 어렵고, 개입전략의 측면에서도 단일한 접근법과 모델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효과로 거둘 수 없다(노일석 2004). 따라서 쉼터의 기능과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 하기 위해서는 자료수집과 사정을 위한 기본적인 상담은 물론이고 심화된 심층상담도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사자의 전문성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쉼터운영에 있어 쉼터를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대체시설로 간주하거나 그에 준해 운영해 온 경우가 많았고, 사회복지사의 자격요건만 갖추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 문제이다. 즉,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자격유무와 상관없이 시설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장으로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운영에 대한 한계를 갖고 있으며 전문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여성부 2005a).

또한 상담원의 경우도 재정상의 어려움이나 시설장의 인식부족으로 지속적인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재교육이나 보수교육에의 참여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고작해봐야 여성부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정도이다. 거기에다 사회복지기관이나 대학 연구소, 또는 여성단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미나, 워크샵, 심포지엄 등에 참여한다고 해도 경비를 상담원 자신이 부담한다거나 사실상 이마저도 시간적 제약으로 직무현장을 비울 수가 없어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쉼터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다양한 계층의 연령, 학력, 직업, 가정환경, 목표지향성 여부 및 욕구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들에게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자격취득만으로 직무에 종사하기에는 많은 제한이 따르며, 시대의 변화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개별상담이나 집단상담, 가해자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이라

는 욕구 부응의 차원에서 볼 때 현재 쉼터 종사자의 전문성은 그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3. 인건비 및 운영비의 재정적 열악

권익증진사업안내 (여성부 2005a)에 명시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지원항목에 의하면, 쉼터 운영비의 부담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어 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이 지자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의 쉼터는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며, 더구나 지원금 증시설운영비를 20-30% 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하고 있어 유연한 예산집행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또한 종사자의 호봉승급에 따른 추가부담, 전문성제고를 위한 교육비 등 재정수요의 증가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재정지원규모가 증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액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증가와 아울러 동반아동의 증가, 입소자의 욕구수준의 확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후원금의 감소 등 복합적인 내·외환경의 변화로 인한 재정적 빈약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확대 없이는 쉼터 자체의 존립마저 위협받을 상황이다. 인건비의 경우에도 상담원의 급여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실정으로 종사자의 생계문제가 시설운영과 업무의 효과성 제고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빈약문제는 쉼터의 운영이나 인건비의 차원뿐만 아니라 동반자녀를 위한 급식보조, 교복구매, 학습용구구입, 학교활동비 등 초·중·고등학교에 취학한 자녀를 위한 별도의 예산 지원 항목이 추가되어 가정폭력피해여성이 자녀를 안심하고 동반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 등 학습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4. 여성주의적 인식의 미흡

가정폭력은 다른 범죄와는 달리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가해자 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비난을 받는 경향이 강하다. 많은 여성학 연구자들은 그 원인을 남녀차별적인 사회구조와 성적 역할분담

등 아내에 대한 폭력을 유지시키는 가부장적 사회제도에서 찾고 있다(Dobash & Dobash 1979). 여성에 대한 남성의 통제와 권위가 경제적·사회적 과정을 통해 지속되면서 형성된 가부장제적인 사회질서와 가족구조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여성의 종속을 합법화하였고, 여성에 대한 남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을 양산하고 있다(이상화 2003)고 주장한다.

가정폭력의 원인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아내의 책임으로 보는 시각, 가해자인 남성의 성장 환경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 시각,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러한 시각과 상관없이 성별로 보면 대체로 남성은 아내를 원인제공자로 보고 있는 반면, 여성은 남편의 가정환경이나 술에 원인을 두고 있는 경향이 높다. 이렇게 남녀가 폭력의 원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폭력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권침해행동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남성들의 폭력에 대해 다소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수록 실제 폭력의 가해율과 피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2001).

여성주의 학자들에 의하면 가정폭력문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허용하는 우리사회의 가부장제적인 문화적 규범, 가치, 구조 등의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공미혜 1999).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아내구타는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학대나 분노, 좌절, 고통에 의한 주기적인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으므로 아내구타는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가부장적 테러리즘' 이라고도 한다. (Pence & Paymar 1993)

따라서 가정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쉼터의 시설장과 전문상담원의 상담이 이루어 질 때만이 가정폭력 피해자는 물론이거니와 가해자 상담에 있어서도 상담의 효과성이 확보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이라는 죄책감에 머무르지 않고 과감하게 자신의 피해상황을 노출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그들의 사회통합에 접근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것이다.

즉,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폭력은 결코 개인적이거나 가정적인 문제로서만이 아닌 역사적·문화적으로 존재하여왔던 지배 권력의 통제수단으로 보고, 가정폭력문제의 해결은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확대와 아울러 가정폭력발생의 근원인 남성중심의 사회문화의 틀을 양성평등의 문화로 전환시켜 내는 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IV. 개선방안

1. 필수적인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쉼터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물리적인 폭력상황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삶을 찾아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확인하고, 인간다운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춰 운영되어야 한다. 즉 피해자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은 어느 정도 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으로 상담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 정서적지원 등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쉼터에 입소한 피해여성들은 폭력으로 인해 자신의 잠재력 상실, 자신감 결여, 인간관계의 위축 등 심리적으로 무기력한 사고와 태도, 행동이 학습되어(learned helplessness)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장되어 있는 6개월의 입소 기간으로는 자립생활이 가능한 정서적 치료와 심리적 회복, 직업훈련과 경제활동 참여 지원이 불가능하다. 자립생활이 가능한 준비를 해가기 위해서는 입소기간을 1년 정도 연장하여야 한다. 입소기간이 연장될 때 쉼터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단순 보호나 위기모면, 숙식제공에서 벗어나 심리적 치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극복, 자존감·자신감의 회복, 자립능력향상이라는 본래적인 기능과 역할의 수행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쉼터에 입소하는 피해여성들은 대체로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당사자인 여성 뿐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도 손상된 가족

관계 치유, 학습활동지도, 타인과의 관계형성 등에 많은 관심과 치유를 통하여 확대받은 아동을 위한 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도 현행의 입소 기간으로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쉼터의 현행 6개월의 입소 기간은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않는 피해자들을 매우 불안하게 하고, 단순한 일시보호를 넘어 장기적인 치유와 자립지원이 요구되는 피해자와 동반아동을 위해서는 기존의 쉼터에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인 1년이 보장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입소자의 질병이나 장애여부, 이혼소소의 소요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는 1년에서 3년까지의 장기입소의 가능성도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입소자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강화해 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쉼터 독자적인 자원과 정보,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가용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자원동원체계의 구축과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쉼터 종사자의 증원과 전문성확보

현재 각 쉼터의 종사자는 거의 대부분이 시설장과 상담원 2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쉼터는 그 특성상 생활시설이므로 24시간 운영체제를 갖추고, 주간은 물론 야간 및 휴일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1인 이상을 상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한된 인력으로는 규정을 준하여 입소자 중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즉 종사자의 장시간근무로 인한 피로누적, 의욕상실, 입소자에 대한 전문서비스제공 불가능 등 연쇄적인 반영으로 쉼터의 제 기능과 역할 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전문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며, 쉼터 내부적으로도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담이나 치료, 법률, 아동보육 전문가, 행정 및 지역사회 타 기관과의 연계를 돕는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필수적이고 보조적인 인력의 조직화와 활용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3. 재정지원의 강화

컴퓨터영의 효율성·효과 증진과 종사자의 직무만족, 입소자의 자립지원 등 안정적인 생계확보를 위해서는 현재의 국고보조금 지원수준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대폭 강화 되어야만 가능하다.

또한 쉼터에 입소하는 여성들은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가정 내 갈등이 남성의 폭력으로 이어지는 등 절대 빈곤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로 지정하여 기초생계 보장과 함께 자녀양육비, 의료보호 등 사회적 보장이 확보되어야 만이 실제적인 자립을 위한 자발적 노력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먼저 사회적 보장을 통해 정서적·경제적 토대를 마련해 주고,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직업교육이나 훈련, 자격취득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정책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 다양한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일례로 정책상의 조정을 통해 지역자활후견기관과 쉼터를 연계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재정상의 지원확대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로 는 쉼터에 자녀를 동반하고 입소한 여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급식보조, 교복구매, 학습용구구입, 학교활동비등의 보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즉 부모와 함께 쉼터에 입소하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적용이나, 놀이공간의 확보, 탁아시설 이용에 따르는 비용이나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위한 가족상담 교육프로그램의 필수적인 이수에 따른 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가정폭력 예방과 치유가 병행되는 데 가장 급선무라 할 수 있다.

4.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서비스제공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침해하는 가정폭력문제는 사회적 문제(social problems)이고, 문화적, 역사적, 이데올로기적 맥락에서 보

면 가정폭력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고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행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가정폭력문제해결을 위한 쉼터의 기능과 역할은 여성주의관점에서 쉼터에 입소하는 피해여성과 그 자녀, 더 나아가 가해자에 이르기까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

우선적으로 가정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쉼터의 시설장과 전문상담원의 상담이 이루어 질 때만이 가정폭력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 상담에 있어서도 상담의 효과성이 확보 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도 자신의 잘못이라는 죄책감에 머무르지 않고 과감하게 자신의 피해상황을 노출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쉼터에 입할 때 사회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쉼터는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주인공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여야 하며, 쉼터에 머물던 여성들의 가정복귀율이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가해한 남편을 상담하고 치료하여 가해자·피해자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폭력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 또는 교정할 수 있을 것이다. 쉼터의 활동은 쉼터 안에서 목표달성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관련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여성연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5. 가정폭력 인식개선 홍보와 예방 강화

가정폭력에 관한 인식개선의 최우선 과제는 가정폭력의 원인이 여성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의 공유이다. 이를 위해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등의 효과적인 홍보와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가정폭력의 문제에 관한 대중적 홍보는 대체로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주로 여성단체나 연구기관에서 발간된 책자나 비디오,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

준이다. 가정폭력문제의 심각성과 피해문제를 전국적인 차원의 일반대중에게 전달하기에는 아직은 인적 자원 확보 측면이나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 홍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임을 인식시키는 캠페인이나 각종 안내책자 발간등이 확대·실시되어야 하고, 가정폭력문제가 단순히 피해자의 일이 아니고 가해자 및 가족모두가 관련된 일임을 주지시키기 위한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민관 공동의 협동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지역사회에서 여성중간리더로서 코디네이터 양성을 통한 체계적인 사회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학교 교육에서도 교과과정에 가정폭력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교사연수에서 선도적으로 가정폭력예방에 관한 선행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폭력 없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언론매체가 대중적 공익광고나 홍보자료를 통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범국민적 인식개선과 예방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담당해야 만이 가능하게 된다.

참고문헌

공미혜(1999) 한국의 가부장적 테러리즘. 도서출판 하우.
 김경신·박옥입·정혜정(1999) 가부장적 관점에서의 가정폭력-아내학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213-239.
 김정옥(2002) 이혼! 그 배경은 무엇인가?. 가족 스트레스; 이혼.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춘계 학술세미나 자료집.
 김재엽(1997) 사회적 스트레스와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 제5권, 99-116.
 노일석(2004) 가폭행위자와 상담프로그램 조명. 2004 여성폭력관련 상담관계자 보수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3-32.
 박영란(2004) 여성의전화 쉼터 운영현황 분석과 대안적 쉼터 모델연구. 대안적 쉼터 모색을 위한 토론회 (사)한국여성의전화연합, 33-72.

보건복지부(2002) 가정폭력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
 변화순. 김현주역(1993) 가족과 결혼의 사회, 서울:나남.
 배인숙(2004) 효과적인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쉼터정책, 대안적 쉼터 모색을 위한 토론회 (사)한국여성의전화연합, 4-16.
 서영숙·박옥입(2002) 청소년에 대한 가정폭력이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7(2), 51-73.
 서울여성의 전화(2001) 쉼터매뉴얼.
 심영희 (1998) 위협사회와 성폭력. 서울:나남출판.
 여성부(2005a) 권익증진사업안내.
 여성부(2005b)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http://www.mogef.go.kr/>
 여성한국사회연구회(1995) 여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이상화(2003)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여성폭력에 대한 일 고찰. 가정폭력·성폭력 업무관계자 연찬회. 여성부, 3-20.
 이소희·이무영(2003) 한국 이혼가족의 이혼과정의 억제요인과 사회적 개입, 한국 이혼가족의 현상과 과제. 한국가족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37-57.
 이소희 외 3인(2004)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대왕사.
 한국여성개발원(2001) 여성폭력방지 종합대책(시안)
 한국여성의전화(1992) 쉼터보고서I.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8) 가정폭력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경혜(2003) 한국사회의 이혼율 급증현상과 이혼원인, 한국 이혼가족의 현상과 과제. 한국가족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9-20.
 한경혜·이정화 (2002) 도시 및 농촌 거주자의 이혼에 대한 태도. 대한가정학회지, 40(9), 161-173.
 Ammerman RT, Hersen M(1999) Assessment of Family Violence . John Wiley & Sons, Ltd.
 Gelles RT(1982) Violence in the Family : A review of research in the Seven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Dobash RE, Dobash RP(1979) Violence against wives: A case against the patriarchy. New York: Free Press
 Dobash RE, Dobash RP(1992) Women. Violence and Social Change. London: Routledge.s. 62-64.
 Parker B, Ulrich Y(1990) A protocol of safety : Research on Abuse of Women. Nursing Research 39, 248-250.
 Pence E, Paymar M(1993) Education Groups for Men Who Batter : The Duluth Model, N. Y. : Springer Publishing Co.